

##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7. 11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7. 16
- 다. 상 정 일 자 : '97. 7. 23 (제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 2. 제안설명요지

가. 제 안 자 : 재무과장 정 부 웅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 교환 대상토지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현 군청사 부지는 협소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화순읍 혼리 26-1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 및 직원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 화순읍 혼리 26-1번지 건설부 소관 국유지 1,315평을 매입 '97. 7. 5일 이전 등기를 마친 토지 일부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 부터 화순법원 및 등기소 신축부지로 현 등기소와 교환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어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의결안을 상정한 것임.

※ 화순법원은 화순, 곡성, 담양 관할 상주 법원 설립

○ 대상토지

- 위 치 : 화순읍 혼리 26-1(대지 4,349㎡)
- 교환요청 토지의 면적 : 약 670평 - 요구면적 약 700여평  
(별첨 도면 참조)
- 교환대상부지 : 화순읍 혼리 30-4 약 353평(대지 1,167㎡)

※ 현 등기소(건평 95평 포함)

○ 교환조건

- 별첨 도면의 교환 희망부분 토지와 현 등기소 부지를 감정평가에 의거 산정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

※ 법원측의 교환대상 토지의 필요성

-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군청과 최단거리 위치
- 현 등기소 부지는 협소하여 민원 업무수행에 어려움
- 군청, 교육청, 우체국, 전매공사등 관공서 밀집지역으로 최적지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을 사항으로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화순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97. 7. 11)를 거치는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 군의 토지 및 건축민원과 밀접한 등기소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필요한 기관으로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요구한바와 같이 상기토지와 교환한후,
- 현 등기소는 별도 사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남은 토지 약600여평은 교환시 차액으로 정비하여, 군청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집행부 의견은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효율적인 공유 재산관리계획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 다만 교환하고 남은 잔여 토지가 본래 공유재산 취득목적과 부합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인근 토지 확보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등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97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의결안 1부. 끝.

## '97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의결안

의안 번호	97 - 101
----------	----------

제출년월일 : 1997. 7. 11.

제출자 : 화순군수

### 1. 제안이유

- 중요재산(군유지) 교환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함.

### 2. 주요내용

- 현 군청사부지는 협소하여 시설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화순읍 훈리 26-1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 및 직원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 화순읍 훈리 26-1번지 건설부소관 국유지 1,315평을 매입 '97. 7. 5자 이전 등기를 마친 토지일부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순법원 및 등기소 신축부지로 현 등기소와 교환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어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한 것임.

※ 화순법원은 화순, 곡성, 담양 관할 상주법원 설립

### 3. 대상토지

- 위치 : 화순읍 훈리 26-1 (대지 4,349㎡)
- 교환요청 토지의 면적 : 약 670여평 - 요구면적 약 700여평 (별첨 도면참조)
- 교환대상부지 : 현 등기소 353평 (건평 95평)

### 4. 교환조건

- 별첨 도면의 교환 희망부분 토지와 현 등기소 부지를 감정평가에 의거 산정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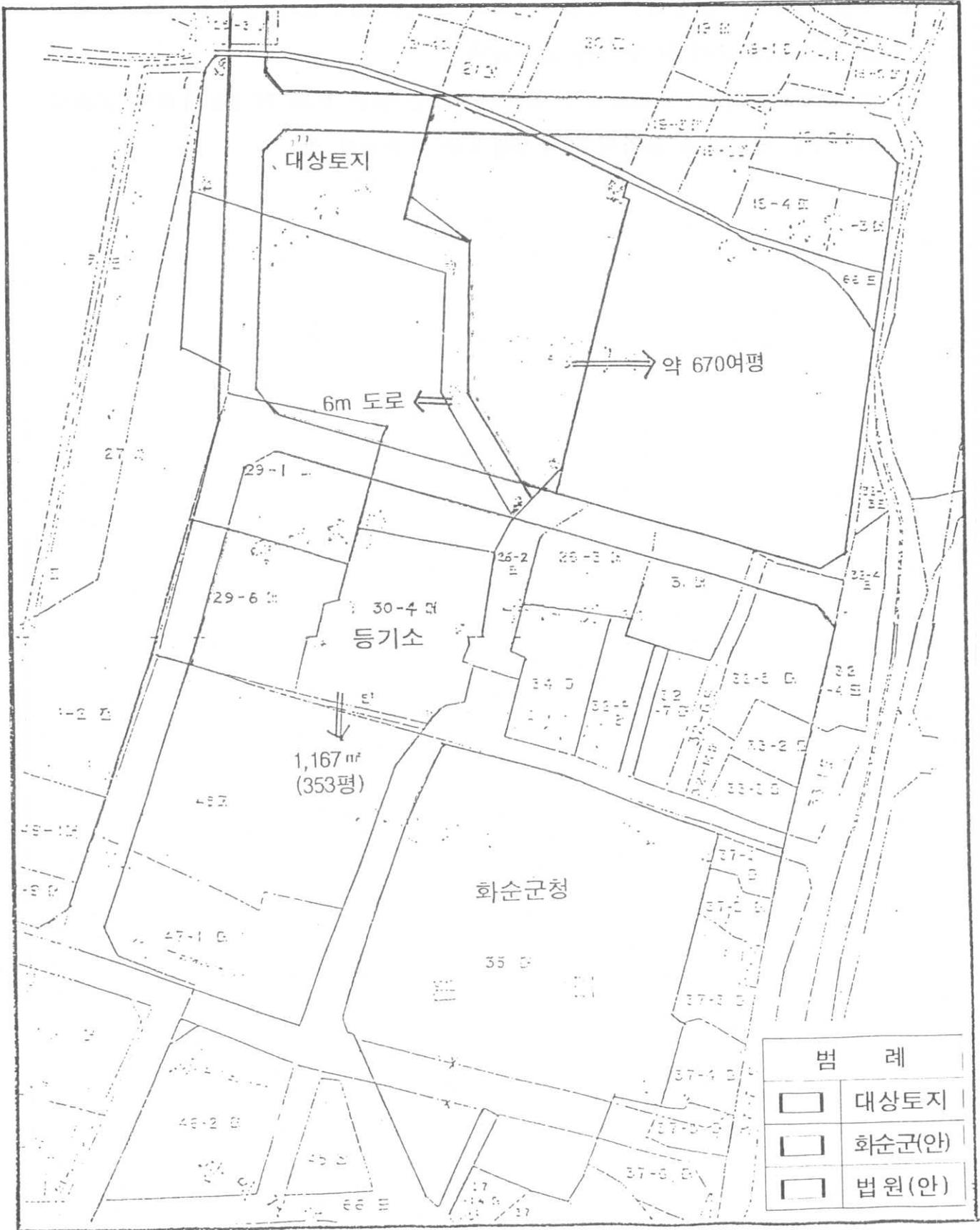
※ 법원측의 교환대상 토지의 필요성

-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군청과 최단거리 위치
- 현 등기소 부지는 협소하여 민원 업무수행에 어려움
- 군청, 교육청, 우체국, 전화국, 전매공사등 관공서 밀집지역으로 최적지

### 5. 군의 의견

-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광주지방법원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본 토지를 교환하여
- 현 등기소는 별도 사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남은 토지 약 600여평은 교환시차액으로 정비하여 군청직원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함.

<位置圖>



#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167 314	238,534 47,100	토지 건물	1,167 314	238,534 47,100	토지 토지	1,167 314	238,534 47,100	
	1. 매입	토지 건물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토지 건물	1,167 314	238,534 47,100	토지 토지	1,167 314	238,534 47,100
처분	계	토지 건물	약 2,215	451,860	토지	약 2,215	451,860	토지	약 2,215	451,860	
	4. 매각	토지 건물									
	5. 양여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약 2,215	451,860	토지	약 2,215	451,860	토지	약 2,215	451,860	
	계	토지 건물									

# '97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표시		교환대상 수량	추정가액	교환시기	교환사유	교환대상자	비고
	지목	소재지						
처분 (토지)	대지	화순읍 훈리 26 - 1	4,349	451,860		광주지방법원 화순법원 및 등기소 부지	광주지방법원	
계				451,860				
취득 (토지)	대지	화순읍 훈리 30 - 4	1,167	238,534			국 (대법원)	
취득 (건물)				47,100				
계				285,634				